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원격영상회의 개의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의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이동 거리, 소요시간 등을 명시(안 제22조 신설)

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의 여비 부분 문구를 정비(안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완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이 확산하였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석자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신변상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 개の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u><신 설></u>	<u>제22조(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u> <u>의 2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를 개의</u> <u>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u> <u>같다.</u> <u>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거나 발</u> <u>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2. 감염병이 확산하였거나 확산</u> <u>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3. 참석자의 이동거리, 소요시</u> <u>간, 신변상 사유 등을 고려할</u> <u>때 불가피한 경우</u> <u>4.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 개의</u> <u>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u> <u>우</u>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별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회의 출석 수당	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		
여비	국내 거주 자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중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항공운임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에 따른 사람의 국외 여비를 합한 금액
	국외 거주 자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의 일비·숙박비·식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중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항공운임을 합한 금액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실비(實費)